

2026년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창업기업 모집 공고

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경기도 뿌리기술을 포함한 기술기반 전문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. 1. 15

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

1 모집개요

- 모집 기간 : 2026년 1월 15일 ~ 2026년 2월 28일(입주예정일 '26.3.1)
- 입주부담금

평 수	보육료	관리비(월)
7평	22만원 (부가세별도)	관리비 면제
14평	44만원 (부가세별도)	관리비 면제

- 입주기간 : 입주일로부터 2년
 - 1년 단위로 연장 심사 후 연장계약 가능
 - 사업성과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계약

2 신청방법 및 진행
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제출처 : hsbi@hs.ac.kr)
- 신청서류 : [별첨1] 2026년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제출서류
 -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③ 기타 포트폴리오
- 진행절차 :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입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 - ※ 입주 심사 시 보육신청자가 직접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(프리젠테이션)을 실시 할 수도 있음

3 모집대상 및 평가절차

- 신청 자격
 - 예비창업자 :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함
 - 기창업자 :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

-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반 업종(스마트농업, 탄소·친환경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반도체, 소프트웨어 등)
- 경기도 지역 뿌리기술(금형, 주조, 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)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조 기업 우대
 - ※ 수출 및 고용 창출 잠재력 보유기업 우대 /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기업

◆ 신청 제외 대상

- ◇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
- ◇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
- 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입주 제외대상 업종 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
- ◇ 폐수, 소음, 진동,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
- ◇ 본 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이 있는 자(업체)
- ◇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 중인 자(업체)
- ◇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◇ 창업보육센터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 5[별표1]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」 제17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

4 입주기업 혜택 및 지원

- 매월 관리비 무료
 - 전기세 등 입주관리비 무료
-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금 및 프로그램 지원
 - 지적재산권(ISO 인증, 특허출원·등록, 실용신안등록 등) 비용 지원
 - 법인설립 및 벤처인증 등록비 지원
 - 시제품 제작비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
 -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 지원
 - 제품 및 기업홍보 지원
 - 내·외부 전문가 멘토링, 교육 및 투자프로그램 등 지원

5 선정자의 의무

- 창업보육센터가 중기부 및 경기도의 성과보고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
-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여 협조하여야 함
- 퇴거 시 1개월 전에는 사전 고지하고 절차에 따를 것

- 퇴거 시 입주보육실은 원상복구 하여야 함

6 문의사항

- 문 의 :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(031-379-0242)
- 담당자 : 민경은 담당 (hsbi@hs.ac.kr)

7 기타사항

-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접수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, 제출서류 누락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접수 취소됨
- 입주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취소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입주 후 입주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취소, 강제퇴거 조치함
- 입주 평가위원회 심의후 탈락기업에 개별통보 없음
- 3개월 이내 선정기업의 입주취소, 선정취소, 강제퇴거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선정 할 수 있음